

모성보호 부정수급 안내

① 모성보호 부정수급이란?

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, 근무 중에 있음에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,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.

②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

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사례

- ① (허위 근로) 근무하지 않는 자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
- ② (피보험 단위기간 과다 신고) 육아휴직 급여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한 일수보다 많게 신고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
- ③ (허위 휴가·휴직)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신청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
- ④ (육아휴직기간 중 취업)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
- ⑤ (복직 미신고) 조기 복직을 하였으나 이를 숨기고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

③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

- ① 남아있는 모성보호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하게 이미 받은 모성보호 급여는 반환해야 하며 **부정수급액과 동일금액을 추가로 반환**해야 합니다.
 - 남아있는 모성보호 급여의 지급 중지
 -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모성보호 급여(부정수급액) 반환
 -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반환
 -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(사업주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)의 거짓된 신고·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**사업주도 그 모성보호 급여를 지급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** 있습니다.
 - 형벌 부과 시, 행위자 처벌 및 법인 벌금형 과함

④ 경미한 부정행위(1~2회에 한함)

- 취업사실을 **미기재 또는 다르게 신고한 경우**의 사안이 경미한 경우, 수급권은 유지하되 **1회에는 “해당 취업한 기간”** 동안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제한, **2회에는 “해당 취업한 기간이 포함된 월”**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제한합니다.
 - * 3회 적발 시, 이후기간 전체 기간에 대한 지급 제한 및 지급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후지급금도 지급 제한, 일반 부정수급과 반환 등 동일하게 처분함

④ 취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모성보호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 신청 시 취업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취업한 날로부터 급여는 중지되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 「취업」으로 인정되는 경우

1.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
2.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